

## 1. 개정이유

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「행정기본법」과 산업안전보건법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,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법으로 상향입법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번호를 정비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(안 제163조제1항 및 제2항, 별지 제65호 및 제66호 서식 개정)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상향입법된 이의신청 기간,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 및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근거 규정을 조문에서 삭제
- 나. 별지 제65호 및 제66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법 조문번호 수정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법제처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  
2) 입법예고(2023. 8. 4. ~ 9. 13.) 중  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  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3조제1항 중 “제1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”를 “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”를 “경우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.

별지 제65호서식 중 “20일”을 “14일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2조제6항”을 “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2조의2제1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66호서식 중 “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2조제7항”을 “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2조의2제2항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
			14일

신청인	①선임인 [ ] 해당 - 신고번호( ) [ ] 비해당		
	사업장명	대표자	②업종
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근로자 수	
	소재지 (전자우편주소: )		
	전화번호	팩스번호	

③구분	[ ] 최초 신청(승인번호: ) [ ] 연장승인 신청(승인번호: )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④제품명	
------	--

⑤ 이의 신청의 취지 및 사유 등	신청물질			검토결과		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
	명칭	(CAS No.)	함유량	대체명칭	대체함유량	
1.						
2.						
3.						

※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가 개별 물질별로 다른 경우 각각 기재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3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

붙임 서류	1.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의 설명에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	수수료 없음
-------	--	-----------

### 작성방법

※ 신청인은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①란은 신청인이 법 제113조에 따른 선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표시합니다.
- ②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.
- ③란은 최초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인지 또는 연장승인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인지 여부를 승인번호와 함께 기재합니다.
- ④란은 화학제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.
- ⑤란은 불승인 된 화학물질의 정보와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를 함께 작성합니다.

### 처리절차

이의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	접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	→	비공개승인 재심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	→	결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	→	통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



